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3 - 333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공개 모집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2월 14일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1. 모집대상: 원장 1명

모집대상		주요 역할
직위	인원	
원장 (상임 이사)	1명	· 이사회 소집 및 진행 ·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집행과 재정 총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 · 소속 직원 지휘·감독

2. 임기 및 보수

직 위	임기	보수
원장	임명일로부터 3년 (상근) ※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후 1년단위 연임가능	· 연봉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해 연봉계약 체결

3. 자격요건

□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참고 1] 사회서비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사회서비스”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4. 결격 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고 2] 임원의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 ·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사회서비스원법 제18조(임원의 해임)** ① 시 · 도지사는 시 · 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② 시 · 도지사는 시 · 도 서비스원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또는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출자출연법) 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 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12. 14.(목). ~ 12. 29.(금). / 16일간 *공고기간 동일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jpass@jeju.pass.or.kr)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제주사회서비스원 사무실

※-1. 방문접수의 경우에는 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2.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별지 4)

□ 직무수행계획 요약서 2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 20매 이내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상훈, 저술증명 등 포함_근무처별) 각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논문(석,박사) 요약문(해당자만) 1부(별지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별지 6)

□ 기타 연구실적(해당자만) 1부

※ 소정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jeju.pass.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을 첨부해야 함.

7. 전형방법 및 절차

※ 하기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통보 진행

□ 서류 심사(2024. 1. 4. 예정) : 개별통보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면접대상자를 결정

○ 평가항목 심사기준 및 배점표

배점	평가요소
20점	사회서비스 및 경영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
20점	조직의 경영 경험 및 능력
20점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20점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20점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

□ 면접 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024. 1. 11. 예정) : 개별통보

○ 평가항목 심사기준 및 배점표

배점	구분	평가항목
20	전문성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2.조직의 효율적인 경영마인드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20	리더십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20	경영혁신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20	노사 및 직원 친화력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3.직원의 안전과 조직의 위기관리능력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20	윤리관	1.공익을 우선하는 직무 인식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1.조직운영에 관한 원칙과 철학
		2.대인관계, 자기관리 능력

□ 최종 합격자 발표(2024. 1. 31. 예정) : 개별통보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 2배수 이상 추천 → 제주특별자치도 적격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임명

8. 기타사항

가. 모집일정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서류심사 합격 및 면접일정, 최종 합격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경영기획팀에 제출하여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공모를 실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jeju.pass.or.kr)에 공고됩니다.

마. 최종 합격자 결정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팀(☎070-4173-86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